

제공일자	2012. 7. 6(금)	담당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홍보담당	김세환 부장(3775-9051)	연락처	3775-9013 010-2394-6630	총 2 매

제목: 복지국가 스웨덴의 연금개혁과 시사점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면적인 연금제도 개선필요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복지국가 스웨덴의 연금 개혁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고령화는 공적연금 수급자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공적연금 재정위기** 문제를 가져올 전망이다.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선하고 시행하느냐 여부는 우리나라의 최대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국가와 프랑스 등 서유럽국가들과 달리 **사회적 갈등 없이 합의과정을 거쳐 전면적으로 공사연금을 개혁한 복지국가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유럽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연금재정이 안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재정의 악화를 우려하여 미연에 공사연금을 개혁하여 인구고령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주요 연금 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의 법정 소득비례연금을 인구구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고 별도의 수익연금을 도입하여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적용으로 **급여를 기여에 비례시키고 기대수명을 반영하여 연금이 지급되도록 함**

으로써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유도할 수 있었다.

* 명목확정기여방식(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 가입자의 보험료기여와 급여를 연계시키고 기여여명 등을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행 기여율 수준으로도 재정안정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

둘째, 모든 노인들에게 확일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되,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초보장을 보다 강화하였다. 정부의 책임하에 일정한 수준의 연금을 저소득계층에게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셋째, 생산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중앙정부 공무원, 지방정부 공무원 등 4개 직군별로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화시키고 퇴직연금 운용을 확정기여형(DC)으로 운용토록 함으로써 연기금 운용에서 개인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도 퇴직연금 가입이 허용되어 특수직역연금 형태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와 달리 스웨덴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연금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여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본적인 공사연금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연금의 역할 축소 및 사적연금의 강화의 보완조치 차원에서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스웨덴식 보증연금제도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하여 연금제도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